

제11장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I 통계분석 내용

1 개요

운영지원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 2, 3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등을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통계분석을 위하여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2 분석 목표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은 이미 시행 중인 제1, 2기 및 제3기 중 일부(중권·금용,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에 대하여 양형기준 준수율, 양형이유 명시적 기재 여부, 특별양형인자의 유무에 따른 형량 비교분석, 특별양형인자와 형량과의 연관성 정도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3 분석 방법

조사자료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 변수(Variable)의 종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통계기법을 사용하였다.

가. 빈도분석

조사된 양형인자를 단일 변수로 하여 그 도수분포 현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분포현황을 파악하는 분석이다.

나. 카이제곱 검정(χ^2 검정)

두 개의 범주형(categorical data) 변수를 결합하여 도수분포 현황을 분석하는 것으로 특정 독립변수(양형인자)가 종속변수(형종·형의 집행 여부)에 어느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의 모든 통계분석은 가설검정에 필요한 검정통계치의 유의확률(p값)을 제시하고 있는데,

유의확률(p값, p-value)이란 귀무가설을 전제로 검정통계치가 나타날 가능성을 측정하는 확률을 말한다. 이 분석에서는 유의수준을 5%(0.05)로 설정하여,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을 경우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검정방법을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test) 이라고 한다.

다. 분산분석 및 T-test

각각의 양형인자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의 항목이 2개일 때는 T-test를 사용하고, 3개 이상일 경우에는 분산분석을 실시하며, 위의 교차분석의 분석내용과 다른 것은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가 연속형변수(continuous variable)라는 것이다.

이들 분산분석 및 T-test는 각 양형인자의 항목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유의확률(p) 값이 유의수준(0.05)보다 작은 경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을 할 수 있다.

라. 회귀분석

회귀분석은 종속변수(형량, 집행유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자들을 반영하여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나타내어 이들 인자들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인 정도를 파악하는데 적합하며, 추후에 형량이나 집행유예 여부에 대한 예측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회귀분석에는 종속변수가 연속형인 회귀분석에 사용하는 단순회귀분석, 중회귀분석 등과 종속변수가 집행유예 여부와 같이 명목형 혹은 범주형인 경우에 사용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포함된다.

II 2012년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1 서론

가. 양형기준 시행 현황

양형위원회는 최초 설립 이후 현재까지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양형기준의 설정 및 변경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살인, 성범죄 등 7개 범죄군

에 대한 제1기 양형기준이 2009. 7. 1.부터, 약취·유인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제2기 양형기준이 2011. 7. 1.부터 각각 시행되고 있고, 제3기 양형기준 중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2012. 7. 1.부터, 선거범죄 양형기준이 2012. 9. 1.부터,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이 2013. 7. 1.부터 각각 시행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살인범죄 양형기준이 2회, 성범죄 양형기준이 4회, 강도범죄 양형기준이 1회에 걸쳐 수정되었다.

아래 표는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양형기준 시행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위원회	기간	주요내용	세부 내용
제1기	2007. 4. 27. ~ 2009. 4. 26.	양형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2009. 7. 1. 시행)
		양형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2011. 7. 1. 시행)
제2기	2009. 4. 27. ~ 2011. 4. 26.	양형기준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법, 성폭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개정에 따른 수정(2010. 7. 15. 시행) 형법 개정에 따른 살인, 성범죄,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2011. 4. 15.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징역형 상한을 개정된 형법 개정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상해, 폭행, 협박), 교통범죄(2012. 7. 1. 시행) - 선거범죄(2012. 9. 1. 시행) - 조세, 공갈, 방화범죄(2013. 7. 1. 시행)
제3기	2011. 4. 27. ~ 2013. 4. 26.	양형기준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2012. 3. 16.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여론 및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 반영 살인범죄(2013. 5. 15. 시행) 및 성범죄(2013. 6. 19. 시행) 양형기준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일부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 상향 및 성범죄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반영
		양형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상해, 폭행, 협박), 교통범죄(2012. 7. 1. 시행) - 선거범죄(2012. 9. 1. 시행) - 조세, 공갈, 방화범죄(2013. 7. 1. 시행)

나.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의 근거와 목적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는 “운영지원단은 판결서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을 운영지원단의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2010년 이후 매년 1년 동안의 양형기준 적용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책자로 발간하여 양형위원회에 보고하였고, 2013년에는 2012년의 양형기준 적용현황을 분석한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위와 같이 정기적으로 양형기준 적용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양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양형기준의 활용실태, 준수여부, 적용효과 등을 파악하고, 형량범위나 양형인자 등 양형기준에 관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함이다. 이를 상술하면 아래 표와 같다.

목 적	세부 내용
양형기준 활용실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기준 설정범죄 처리 현황 파악 ● 양형기준 설정범죄 중 양형기준 적용사건 해당 여부 파악
양형기준 준수여부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기준 준수율 파악 ● 양형기준의 명시적 기재 여부 파악
양형기준 적용효과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기준 설정·수정 이후 형량 변화 및 편차 파악
양형기준 개선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기준 중 실무에 적용하기 부적당하거나 불명확한 부분 파악 ● 양형인자,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빈도, 형량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 ● 새로운 양형인자나 집행유예 참작사유 발굴

다. 분석 대상

2012년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은 제1, 2, 3기 양형기준의 각 시행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으로서,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1심에서 선고된 제1, 2기 적용대상 사건 및 제3기 적용대상 사건 중 2012. 7. 1.부터 시행된 중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사건과 2012. 9. 1.부터 시행된 선거범죄 사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2 2012년 전체 현황

가. 양형기준 설정범죄

제1, 2, 3기 양형기준을 범죄군별로 죄명 및 적용법조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범죄군	세부죄명	적용법조
살인범죄	살인	형 250①
	살인미수	형 254, 250①
	존속살해	형 250②
	존속살해미수	형 254, 250②
	강간 등 살인	형 301조의2, 성폭법 9①
	강간 등 살인미수	성폭법 14
	강도살인	형 338
	강도살인미수	형 342
	인질살해	형 324조의4
	인질살해미수	형 324조의5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특가법 5조의2 ②2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미수	특가법 5조의2 ⑥
	특가법위반(보복살인)	특가법 5조의9 ①
뇌물범죄	뇌물수수 등	형 129①
	사전뇌물수수 등	형 129②
	수뢰 후 부정처사	형 131①
	부정처사 후 수뢰	형 131②③
	특가법위반(뇌물수수 등)	특가법 2①
	뇌물공여 등	형 133①
	제3자 뇌물교부 등	형 133②
성범죄	강간	형 297
	강제추행	형 298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 299
	강간 등 상해·치상	형 301
	강간 등 처사	형 301조의2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등	형 305

범죄군	세부죄명	적용법조
	상습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년자의제강간등)	형 305조의2
	강도강간	형 339
	성폭력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법 3①
	성폭력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법 3②
	성폭력특례법위반(특수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법 4
	성폭력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법 5
	성폭력특례법위반(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법 6
	성폭력특례법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법 7
	성폭력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성폭법 8
	성폭력특례법위반(강간 등 치사)	성폭법 9②, ③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7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1조의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신고의무자의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2조의2
	특가법위반(강도강간 재범)	특가법 5조의5
강 도 범 죄	강도	형 333
	특수강도	형 334
	준강도, 준특수강도	형 335
	강도상해·치상	형 337
	강도치사	형 338
	상습강도 등	형 341
	특가법위반(상습강도 등)	특가법 5조의4 ③
	특가법위반(누범강도 등)	특가법 5조의4 ⑤
	특가법위반(강도상해 재범)	특가법 5조의5
횡령 · 배임 범죄	횡령	형 355①
	배임	형 355②
	업무상 횡령·배임	형 356
	특경법위반(횡령·배임)	특경법 3①

범죄군	세부죄명	적용법조
위 증 범 죄	위증	형 152①
	모해위증	형 152②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국회증언·감정에관한법률 14①
	특허법위반	특허법 227①
	실용신안법위반	실용신안법 47①
	디자인보호법위반	디자인보호법 83①
	상표법위반	상표법 94①
무고 범 죄	무고	형 156
	특가법위반(무고)	특가법 14
약 취 · 유 인 범 죄	미성년자 약취·유인	형 287
	특가법위반(영리약취·유인·매매 등)	특가법 5조의2④, 형 288
	특가법위반(국외이송약취·유인·매매)	특가법 5조의2④, 형 289
	특가법위반(약취·유인·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특가법 5조의2④, 형 292
	상습범	특가법 5조의2⑤, 형 293①
	인질강요	형 324조의2
	인질상해·치상	형 324조의3
	인질치사	형 324조의4
	특가법위반(재물 등 취득 목적 약취·유인)	특가법 5조의2 ①1호
	특가법위반(살해 목적 약취·유인)	특가법 5조의2 ①2호
	특가법위반(약취·유인 후 재물 등 취득)	특가법 5조의2 ②1호
	특가법위반(약취·유인 후 폭행 등)	특가법 5조의2 ②3호
	특가법위반(약취·유인치사)	특가법 5조의2 ②4호
	사 기 범 죄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 347조의2
준사기		형 348
상습사기		형 351(다만, 형 347, 347조의2, 348조의 상습범에 한함)
특경법위반(사기)		특경법 3①
절 도 범 죄	절도	형 329
	야간주거침입절도	형 330
	특수절도	형 331

범죄군	세부죄명	적용법조
	특가법위반(상습·누범절도)	특가법 5조의4 ①, ②, ⑤,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3 ①, ③
	산림보호법 위반	산림보호법 54①
	특가법 위반(산림)	특가법 9①②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35②
	문화재보호법 위반	문화재보호법 92①, ②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형 225
	자격모용공문서 등 작성	형 226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형 22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형 227조의2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형 228①
	문서 등의 행사	형 229
	공문서 등 부정행사	형 230
사문서범죄	사문서 등 위조·변조	형 231
	자격모용사문서 등 작성	형 232
	사전자기록 위작·변작	형 232조의2
	허위진단서 등 작성	형 233
	문서 등의 행사	형 234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형 136①
	직무강요	형 136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 137
	공용물 무효·파괴	형 141①, ②
	특수공무방해	형 144①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형 144②
식품·보건범죄	농수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농수산물 위생관리법 14, 15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 34조의3, 35조1호내지3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수산물품질관리법 53, 53조의3 1호

범죄군	세부죄명	적용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 45①2호, 3호, 7호, ②1호, 14호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93①,②, 94조 1호, 2호, 95조 1호, 97조 1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43, 44조4호, 6호, 7호
	약사법위반	약사법 93①10호, 94①9호,
	화장품법위반	화장품법 28①3호, 4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 등)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2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3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
	의료법위반	의료법 87①2호
마약범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	유해물질법 58조 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관리법 58①5호, 59조①11호내지13호, 61① 3호, 7호, 8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관리법 58①2호내지4호, 6호, 7호, 59①5호내지8호, 60①2호내지4호, 61①2호내지4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관리법58①1호, 2호, 7호, 59①1호내지5호, 60①2호, 61①1호
	특가법위반	특가법 11②1호, 2호
	상습범	마약관리법 58②, 59②, 60②, 61②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법 443①1호내지3호, ② 자본시장법 443①4호내지7호, ② 자본시장법 443①8호,9호, ② 자본시장법 445 20호 자본시장법 444 12호내지14호, 18호

범죄군	세부죄명	적용법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외감법 20①, ②
	특경법위반(수재등)	특경법 5①, ②, ③
	특경법위반(증재등)	특경법 6①, ②
	특경법위반(알선수재)	특경법 7
지식재산권범죄	특허법위반	특허법 225①
	실용신안법위반	실용신안법 45①
	디자인보호법위반	디자인보호법 82①
	상표법위반	상표법 93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136①, ②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산기법 36①, ②, 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경법 18①, ②, ③1호,2호
폭력범죄	상해	형 257①
	존속상해	형 257②
	폭처법위반(공동상해)	폭처법 2②
	폭처법위반(공동존속상해)	폭처법 2②
	중상해	형 258①, ②
	중존속상해	형 258③
	상해치사	형 259①
	존속상해치사	형 259②
	특가법위반(보복목적상해치사)	특가법 5조의9③
	특가법위반(보복목적 상해)	특가법 5조의9②
	상습상해	형 264
	상습존속상해	형 264
	상습중상해	형 264
	상습중존속상해	형 264
	폭처법위반(상습상해)	폭처법 2①3호
	폭처법위반(상습존속상해)	폭처법 2①3호
	폭처법위반(누범상해)	폭처법 2③
	폭처법위반(누범존속상해)	폭처법 2③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처법 3①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폭처법 3①

범죄군	세부죄명	적용법조
	폭처법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폭처법 3③3호
	폭처법위반(상습집단·흉기등존속상해)	폭처법 3③3호
	폭처법위반(누범집단·흉기등상해)	폭처법 3④
	폭처법위반(누범집단·흉기등존속상해)	폭처법 3④
	폭행	형 260①
	존속폭행	형 260②
	폭처법위반(공동폭행)	폭처법 2②
	폭처법위반(공동존속폭행)	폭처법 2②
	특가법위반(운전자 폭행)	특가법 5조의10①
	폭행치상	형 262
	특수폭행치상	형 262
	특수폭행치상(중상해)	형 262
	존속폭행치상	형 262
	존속폭행치상(중상해)	형 262
	폭행치사	형 262
	특수폭행치사	형 262
	존속폭행치사	형 262
	특가법위반(보복목적 폭행치사)	특가법 5조의9③
	특가법위반(운전자 폭행치상)	특가법 5조의10②
	특가법위반(운전자 폭행치사)	특가법 5조의10②
	상습폭행	형 264
	상습존속폭행	형 264
	상습특수폭행	형 264
	폭처법위반(상습폭행)	폭처법 2①1호
	폭처법위반(상습존속폭행)	폭처법 2①2호
	폭처법위반(누범폭행)	폭처법 2③
	폭처법위반(누범존속폭행)	폭처법 2③
	특수폭행	형 261
	특수존속폭행	형 261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처법 3①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	폭처법 3①

범죄군	세부죄명	적용법조	
	폭처법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	폭처법 3③1호	
	폭처법위반(상습집단·흉기등존속폭행)	폭처법 3③2호	
	폭처법위반(누범집단·흉기등폭행)	폭처법 3④	
	폭처법위반(누범집단·흉기등존속폭행)	폭처법 3④	
	특가법위반(보복목적 폭행)	특가법 5조의9②	
	협박	형 283①	
	존속협박	형 283②	
	폭처법위반(공동협박)	폭처법 2②	
	폭처법위반(공동존속협박)	폭처법 2②	
	특가법위반(운전자 협박)	특가법 5조의10①	
	특가법위반(운전자 협박치상)	특가법 5조의10②	
	특가법위반(운전자 협박치사)	특가법 5조의10②	
	상습협박	형 285	
	상습존속협박	형 285	
	상습특수협박	형 285	
	폭처법위반(상습협박)	폭처법 2①1호	
	폭처법위반(상습존속협박)	폭처법 2①2호	
	폭처법위반(누범협박)	폭처법 2③	
	폭처법위반(누범존속협박)	폭처법 2③	
	특수협박	형 284	
	특수존속협박	형 284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처법 3①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폭처법 3①	
	폭처법위반(상습집단·흉기등협박)	폭처법 3③1호	
	폭처법위반(상습집단·흉기등존속협박)	폭처법 3③2호	
	폭처법위반(누범집단·흉기등협박)	폭처법 3④	
	폭처법위반(누범집단·흉기등존속협박)	폭처법 3④	
	특가법위반(보복목적 협박)	특가법 5조의9②	
	교통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법 3①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가법 5조의11

범죄군	세부죄명	적용법조
	특가법위반(도주차량)	특가법 5조의3①1호, 5조의3①2호, 5조의3②1호, 5조의3②2호
선거범죄	공직선거법위반	공선법 230⑦, ⑧ 공선법 230①, ③, ④, ⑥, 235① 공선법 230②, ③, 235② 공선법 231①, ②, 232①, ② 공선법 233①, ② 공선법 257①, ② 공선법 251, 252① 공선법 250①, ③ 공선법 250② 공선법 254①, ② 공선법 255①, ② 공선법 255③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지자법 49①, 57①

- ※ 1. 미수죄는 살인범죄군에서만 양형기준 적용 대상임
- 2. (강간, 준강간)살인,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살인, 성폭력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및 강도살인죄의 경우 2011. 4. 15. 이전에는 '성범죄군' 및 '강도범죄군' 에 포함됨

나. 처리현황

(1) 월별 처리현황

2012년 선고된 양형기준 설정범죄에 대한 월별 처리건수⁹⁾는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9) 동종경합범 또는 이종경합범 중 일부인 경우와 단일범으로 공소제기 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이들 사건 중에는 무죄, 선고유예, 공소기각 등의 사유에 의해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에서 제외되는 사건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음

단위 : 명

위원회	범죄군	2012년												전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제1기	살인범죄	48	66	36	50	66	71	60	57	53	54	78	67	706
	뇌물범죄	68	125	35	48	93	74	101	66	129	115	83	66	1,003
	성범죄	391	519	284	404	468	434	477	441	519	510	701	508	5,656
	강도범죄	107	119	69	119	140	131	86	113	107	92	139	100	1,322
	횡령·배임범죄	471	702	193	397	489	474	469	413	470	474	634	391	5,577
	위증범죄	85	104	67	135	101	103	79	96	108	95	114	69	1,156
	무고범죄	129	146	67	94	140	126	123	106	94	131	154	112	1,422
제1기 소계		1,299	1,781	751	1,247	1,497	1,413	1,395	1,292	1,480	1,471	1,903	1,313	16,842
제2기	약취·유인범죄	5	21	6	7	8	5	5	20	2	4	24	8	115
	사기범죄	1,907	2,612	1,239	2,172	2,871	2,804	2,890	2,801	2,756	3,025	3,765	2,545	31,387
	절도범죄	862	1,053	688	1,105	1,262	1,212	1,236	1,094	1,182	1,281	1,476	963	13,414
	공문서범죄	107	104	71	114	207	113	109	102	106	91	121	108	1,353
	사문서범죄	111	149	95	125	183	136	177	155	128	154	230	115	1,758
	공무집행방해범죄	417	487	319	503	655	525	577	485	490	528	651	440	6,077
	식품·보건범죄	209	212	189	270	333	287	239	194	270	252	288	211	2,954
미약범죄	248	332	39	307	353	400	367	351	397	364	460	326	3,944	
제2기 소계		3,866	4,970	2,646	4,603	5,872	5,482	5,600	5,202	5,331	5,699	7,015	4,716	61,002
제3기	증권·금융범죄	-	-	-	-	-	-	2	3	8	6	13	9	41
	지식재산범죄	-	-	-	-	-	-	4	43	126	118	120	137	548
	폭력범죄	-	-	-	-	-	-	142	680	1,986	2,422	3,576	2,425	11,231
	교통범죄	-	-	-	-	-	-	64	485	1,266	1,421	1,922	1,304	6,462
	선거범죄	-	-	-	-	-	-	-	-	12	61	138	85	296
제3기 소계		-	-	-	-	-	212	1,211	3,398	4,028	5,769	3,960	18,578	
전체		5,165	6,751	3,397	5,850	7,369	6,895	7,207	7,705	10,209	11,198	14,687	9,989	96,422

월별 처리건수를 보면 9월 이전에는 3월을 제외하고는 5,000 ~ 8,000건 정도가 처리되었으나, 제3기 양형기준이 시행되고 그 대상사건에 대한 선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9월 이후부터 처리건수가 월 1만 건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2) 선고내역

2012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양형기준 설정범죄 전체사건의 범죄별 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정식재판청구사건 포함).

단위: 명, %

위원회	범죄군		선고내역							전체
			사형	무기징역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	기타	
제1기	살인범죄	수	2	16	519	118	0	0	51	706
		비율	0.3	2.3	73.5	16.7	0.0	0.0	7.2	100.0
	뇌물범죄	수	0	0	345	352	99	21	186	1,003
		비율	0.0	0.0	34.4	35.1	9.9	2.1	18.5	100.0
	성범죄	수	0	2	2,130	1,384	804	13	1,323	5,656
		비율	0.0	0.0	37.7	24.5	14.2	0.2	23.4	100.0
	강도범죄	수	0	0	755	366	7	0	194	1,322
		비율	0.0	0.0	57.1	27.7	0.5	0.0	14.7	100.0
	횡령·배임 범죄	수	0	0	1,697	1,932	1,200	93	655	5,577
		비율	0.0	0.0	30.4	34.6	21.5	1.7	11.7	100.0
	위증범죄	수	0	0	133	426	429	15	153	1,156
		비율	0.0	0.0	11.5	36.9	37.1	1.3	13.2	100.0
	무고범죄	수	0	0	273	511	407	16	215	1,422
		비율	0.0	0.0	19.2	35.9	28.6	1.1	15.1	100.0
	제1기 소계	수	2	18	5,852	5,089	2,946	158	2,777	16,842
		비율	0.0	0.1	34.7	30.2	17.5	0.9	16.5	100.0

단위: 명, %

위원회	범죄군		선고내역							전체
			사형	무기징역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	기타	
제2기	약취·유인 범죄	수	0	0	59	44	1	0	11	115
		비율	0,0	0,0	51,3	38,3	0,9	0,0	9,6	100,0
	사기범죄	수	0	2	12,972	7,416	7,254	225	3,518	31,387
		비율	0,0	0,0	41,3	23,6	23,1	0,7	11,2	100,0
	절도범죄	수	0	2	5,049	3,583	2,145	242	2,393	13,414
		비율	0,0	0,0	37,6	26,7	16,0	1,8	17,8	100,0
	공문서범죄	수	0	0	235	474	423	14	207	1,353
		비율	0,0	0,0	17,4	35,0	31,3	1,0	15,3	100,0
	사문서범죄	수	0	0	367	569	501	50	271	1,758
		비율	0,0	0,0	20,9	32,4	28,5	2,8	15,4	100,0
	공무집행방해 범죄	수	0	0	817	1,816	2,726	52	666	6,077
		비율	0,0	0,0	13,4	29,9	44,9	0,9	11,0	100,0
	식품·보건 범죄	수	0	0	82	363	1,778	111	620	2,954
		비율	0,0	0,0	2,8	12,3	60,2	3,8	21,0	100,0
마약범죄	수	0	0	2,335	1,190	143	5	271	3,944	
	비율	0,0	0,0	59,2	30,2	3,6	0,1	6,9	100,0	
제2기 소계	수	0	4	21,916	15,455	14,971	699	7,957	61,002	
	비율	0,0	0,0	35,9	25,3	24,5	1,1	13,0	100,0	
제3기	증권·금융 범죄	수	0	0	7	11	12	0	11	41
		비율	0,0	0,0	17,1	26,8	29,3	0,0	26,8	100,0
	지식재산범죄	수	0	0	27	105	238	12	166	548
		비율	0,0	0,0	4,9	19,2	43,4	2,2	30,3	100,0
	폭력범죄	수	0	0	1,233	3,193	4,573	305	1,927	11,231
		비율	0,0	0,0	11,0	28,4	40,7	2,7	17,2	100,0
	교통범죄	수	0	0	339	3,126	2,014	45	938	6,462
		비율	0,0	0,0	5,2	48,4	31,2	0,7	14,5	100,0
	선거범죄	수	0	0	9	35	212	11	29	296
		비율	0,0	0,0	3,0	11,8	71,6	3,7	9,8	100,0
제3기 소계	수	0	0	1,615	6,470	7,049	373	3,071	18,578	
	비율	0,0	0,0	8,7	34,8	37,9	2,0	16,5	100,0	
전체	수	2	22	29,383	27,014	24,966	1,230	13,805	96,422	
	비율	0,0	0,0	30,5	28,0	25,9	1,3	14,3	100,0	

전체사건의 선고내역을 살펴보면 실형(사형 및 무기징역 포함, 30.5%) > 집행유예(28.0%) > 벌금형(25.9%)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살인범죄(사형 및 무기징역 포함, 76.1%) > 마약범죄(59.2%) > 강도범죄(57.1%) > 약취·유인범죄(51.3%) 순으로 나타났다.

위 표 중 사기범죄와 절도범죄의 선고내역에서 무기징역이 각 2건씩 나타난 이유는 해당 사건들이 살인사건과 병합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위 선고내역 중 기타사건은 공소기각(공소취소), 무죄, 소년부송치 등의 사건으로서 아래 양형기준 비적용 사건으로 분류되어 이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1) 비적용 사유

양형기준 설정범죄라 하더라도 모든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비적용 사유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아래 내용과 같다.

- ▶ 공소기각사건, 무죄사건 :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가 경합범 중 일죄로 포함되었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종국결과가 벌금형 이상으로 전산에 입력됨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되었으나,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선고된 사건
- ▶ 미수범사건 : 살인범죄군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군의 경우 미수범에 관한 양형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인정된 죄명이 미수범인 경우 분석에서 제외함
- ▶ 상상적 경합사건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음 ('양형기준' 책자 참조)
- ▶ 선고유예사건 : 양형기준은 선고유예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 ▶ 소년사건 : 소년법에 대하여 성인법과 동일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소년법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양형기준은 소년이 아닌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음 ('양형기준' 책자 참조)
- ▶ 인정죄명 변경사건 :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실제로 인정된 죄명이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 벌금형 선택사건, 정식재판 청구사건 : 양형기준은 벌금형에 관한 기준(선거범죄는 제외)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구약식 또는 정식재판 청구사건에

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양형기준’ 책자 참조)

-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건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전체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려면 판결이 확정된 범죄에 대하여도 충분한 양형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며,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선고형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에 따른 다양한 처리방식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음(‘양형기준’ 책자 참조)
- ▶ 기타 : 양형기준이 설정되었으나 그 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기소된 경우 또는 형의 면제 등이 선고된 경우 등

아래 표는 양형기준 비적용 사건의 사유별 분포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단위 : 명

위원회	범죄군	공소 기각 사건 (결정 포함)	무죄 사건	미수 사건	벌금형 사건 (구공판 사건)	상상적 경합 사건	선고 유예 사건	소년범 사건	인정 죄명 변경 사건	정재 청구 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사건	기타 사건	전체
제 1 기	살인범죄	6	10	2	0	4	0	13	16	0	12	35	98
	뇌물범죄	2	88	0	89	7	21	0	6	14	38	102	367
	성범죄	460	159	206	520	9	11	477	4	613	148	178	2,785
	강도범죄	2	8	8	7	11	0	240	33	0	53	41	403
	횡령·배임범죄	22	360	4	337	78	10	7	8	1,147	321	127	2,421
	위증범죄	3	76	0	225	0	4	0	1	288	63	15	675
	무고범죄	5	75	0	139	38	5	9	5	363	72	57	768
제1기 소계	500	776	220	1,317	147	51	746	73	2,425	707	555	7,517	
제 2 기	약취·유인범죄	2	4	1	1	0	0	4	0	0	9	5	26
	사기범죄	73	729	8	1,475	349	45	534	32	7,708	2,896	1,016	14,865
	절도범죄	35	82	27	441	8	53	1,557	14	2,489	343	631	5,680
	공문서범죄	2	27	0	126	5	4	44	4	417	77	41	747
	사문서범죄	3	51	0	113	4	3	14	3	606	73	54	924
	공무집행방해범죄	7	39	0	517	28	3	24	20	2,797	35	93	3,563
	식품·보안범죄	8	27	0	207	5	7	1	7	2,230	6	62	2,560
	마약범죄	11	67	6	94	10	1	44	4	58	170	166	631
제2기 소계	141	1,026	42	2,974	409	116	2,222	84	16,305	3,609	2,068	28,996	

단위 : 명

위원회	범죄군	공소 기각 사건 (결정 포함)	무죄 사건	미수 사건	벌금형 사건 (구공판 사건)	상상적 경합 사건	선고 유예 사건	소년범 사건	인정 죄명 변경 사건	정재 청구 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사건	기타 사건	전체
제3기	증권·금융범죄	0	2	0	3	1	0	0	0	10	3	8	27
	지식재산범죄	28	1	0	49	1	2	1	0	328	2	7	419
	폭력범죄	200	16	3	599	64	27	116	10	5,738	88	219	7,080
	교통범죄	78	11	0	634	87	11	41	0	2,130	20	122	3,134
	선거범죄	1	9	0	0	24	11	0	0	0	1	23	69
제3기 소계		307	39	3	1,285	177	51	158	10	8,206	114	379	10,729
전체		948	1,841	265	5,576	733	218	3,126	167	26,936	4,430	3,002	47,242

(2)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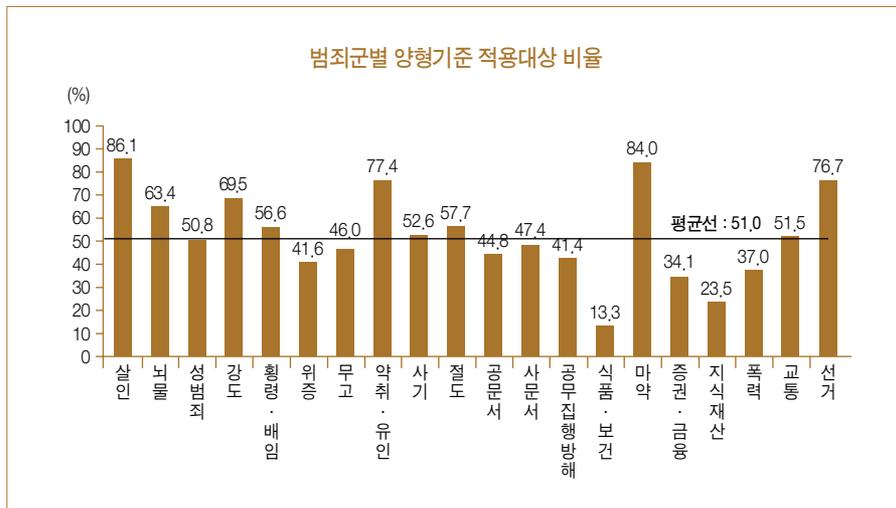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전체사건 중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의 범죄군별 비율은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단위 : 명, %

위원회	범죄군	양형기준 적용대상				전체
		해당		비해당		
		수	비율	수	비율	
제1기	살인범죄	608	86.1	98	13.9	706
	뇌물범죄	636	63.4	367	36.6	1,003
	성범죄	2,871	50.8	2,785	49.2	5,656
	강도범죄	919	69.5	403	30.5	1,322
	횡령·배임범죄	3,156	56.6	2,421	43.4	5,577
	위증범죄	481	41.6	675	58.4	1,156
	무고범죄	654	46.0	768	54.0	1,422
제1기 소계		9,325	55.4	7,517	44.6	16,842
제2기	약취·유인범죄	89	77.4	26	22.6	115
	사기범죄	16,522	52.6	14,865	47.4	31,387
	절도범죄	7,734	57.7	5,680	42.3	13,414

단위 : 명, %

위원회	범죄군	양형기준 적용대상				
		해 당		비해당		전 체
		수	비 율	수	비 율	
	공문서범죄	606	44.8	747	55.2	1,353
	사문서범죄	834	47.4	924	52.6	1,758
	공무집행방해범죄	2,514	41.4	3,563	58.6	6,077
	식품·보건범죄	394	13.3	2,560	86.7	2,954
	마약범죄	3,313	84.0	631	16.0	3,944
제2기 소계		32,006	52.5	28,996	47.5	61,002
제3기	증권·금융범죄	14	34.1	27	65.9	41
	지식재산범죄	129	23.5	419	76.5	548
	폭력범죄	4,151	37.0	7,080	63.0	11,231
	교통범죄	3,328	51.5	3,134	48.5	6,462
	선거범죄	227	76.7	69	23.3	296
제3기 소계		7,849	42.2	10,729	57.8	18,578
전체		49,180	51.0	47,242	49.0	96,422



전체사건 중에서 위와 같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을 제외한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의 비율은 51%(전체 96,422건 중 49,180건)로 나타났다.

범죄군별 비율을 보면 살인범죄(86.1%)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마약범죄(84.0%), 약취·유인범죄(77.4%), 선거범죄(76.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범죄군 중 식품·보건범죄의 비율이 13.3%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기소된 사건들의 대부분이 정식재판청구사건이기 때문이다.

한편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이라도 병합사건의 경우에는 하나의 선고결과가 병합한 사건과 피병합 사건 모두에서 이중으로 통계에 반영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따라서 병합사건의 경우 병합한 사건과 피병합 사건 중 양형기준 상의 기준형량이 더 높은 사건에 대하여만 통계에 반영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는 '기타(병합)사건'으로 분류하여 세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¹⁰⁾

라. 양형기준 준수율

양형기준 준수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은 위에서 언급한 '양형기준 비적용 사건' 및 '기타(병합)사건'을 제외한 사건이다(이하 모든 내용에서 동일함).

(1) 범죄군별 준수율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의 범죄군별 양형기준 준수율은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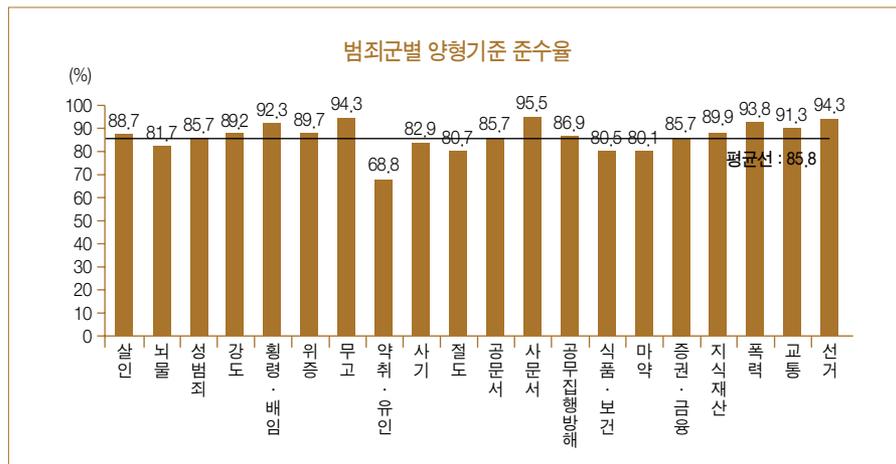
단위: 명, %

위원회	범죄군	양형기준 준수여부				전체
		준수		부준수		
		수	비율	수	비율	
제1기	살인범죄	536	88.7	68	11.3	604
	뇌물범죄	460	81.7	103	18.3	563
	성범죄	2,386	85.7	399	14.3	2,785
	강도범죄	781	89.2	95	10.8	876
	횡령·배임범죄	2,545	92.3	213	7.7	2,758
	위증범죄	411	89.7	47	10.3	458
	무고범죄	578	94.3	35	5.7	613
제1기 소계		7,697	88.9	960	11.1	8,657

10) 2012년도의 범죄군별 기타(병합)사건 빈도는 230쪽 표 참조

단위 : 명, %

위원회	범죄군	양형기준 준수여부				전체
		준수		부준수		
		수	비율	수	비율	
제2기	약취·유인범죄	55	68,8	25	31,3	80
	사기범죄	10,127	82,9	2,093	17,1	12,220
	절도범죄	5,331	80,7	1,275	19,3	6,606
	공문서범죄	466	85,7	78	14,3	544
	사문서범죄	701	95,5	33	4,5	734
	공무집행방해범죄	2,120	86,9	319	13,1	2,439
	식품·보건범죄	313	80,5	76	19,5	389
	마약범죄	2,258	80,1	562	19,9	2,820
제2기 소계	21,371	82,7	4,461	17,3	25,832	
제3기	증권·금융범죄	12	85,7	2	14,3	14
	지식재산범죄	116	89,9	13	10,1	129
	폭력범죄	3,718	93,8	244	6,2	3,962
	교통범죄	3,013	91,3	287	8,7	3,300
	선거범죄	214	94,3	13	5,7	227
제3기 소계	7,073	92,7	559	7,3	7,632	
전체	36,141	85,8	5,980	14,2	42,121	



범죄별 양형기준 준수율은 시문서범죄(95.5%)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무고범죄(94.3%), 선거범죄(94.3%), 폭력범죄(93.8%) 순이었다. 반대로 약취·유인범죄(68.8%), 마약범죄(80.1%), 식품·보건범죄(80.5%) 순으로 준수율이 낮게 나타났다.¹¹⁾

(2) 법원별 준수율

법원별 양형기준 준수율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명, %

지방법원	양형기준 준수여부				전 체
	준 수		부준수		
	수	비 율	수	비 율	
A	3,050	84.1	575	15.9	3,625
B	1,165	84.7	211	15.3	1,376
C	1,684	86.5	263	13.5	1,947
D	1,187	83.3	238	16.7	1,425
E	997	83.2	202	16.8	1,199
F	1,904	86.2	306	13.8	2,210
G	3,395	87.4	490	12.6	3,885
H	5,048	86.8	770	13.2	5,818
I	1,250	88.4	164	11.6	1,414

11) 한편 2011. 7. 1. 시행된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 적용사례가 적어 현재의 자료는 통계로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부준수 사건 중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추행·간음·영리 목적 약취·유인)으로 기소된 사건이 적지 않은데, 위 사건에 해당하는 '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형량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인 점을 감안하여 '징역 4년 - 6년' 으로 규범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안이 무겁지 않거나 공범의 경우 가담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권고형량대로 높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2013. 4. 5. 특가법 개정으로 위 규정이 삭제되어 개정 형법이 적용되는데 위 개정 형법상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로서 위 특가법보다 현저히 낮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추정될 수 있다. 양형위원회는 위와 같은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며, 향후 양형기준 수정작업을 거친 후 양형기준이 실무에 정착되면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준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위: 명, %

지방법원	양형기준 준수여부				전 체
	준 수		부준수		
	수	비 율	수	비 율	
J	2,585	88.2	346	11.8	2,931
K	1,011	86.2	162	13.8	1,173
L	3,351	87.2	492	12.8	3,843
M	2,699	84.4	500	15.6	3,199
N	692	83.5	137	16.5	829
O	1,892	84.4	349	15.6	2,241
P	2,543	83.2	512	16.8	3,055
Q	1,206	87.0	180	13.0	1,386
R	482	85.3	83	14.7	565
전체	36,141	85.8	5,980	14.2	42,121

모든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전체 평균 85.8% 안팎으로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3) 사건 구분별 준수율

사건구분에 따른 양형기준 준수율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명, %

사건 구분	양형기준 준수여부				전 체
	준 수		부준수		
	수	비 율	수	비율	
고합	7,456	85.8	1,230	14.2	8,686
고단	28,685	85.8	4,750	14.2	33,435
전체	36,141	85.8	5,980	14.2	42,121

구공판사건에 해당되는 고합 및 고단사건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모두 85.8%로 동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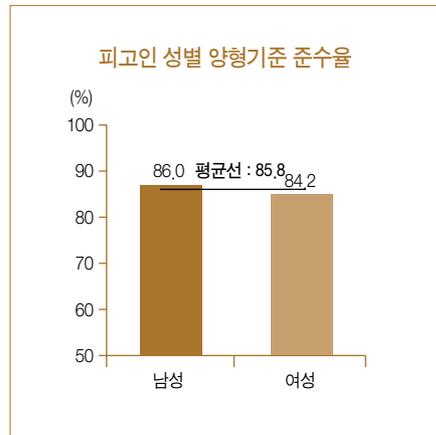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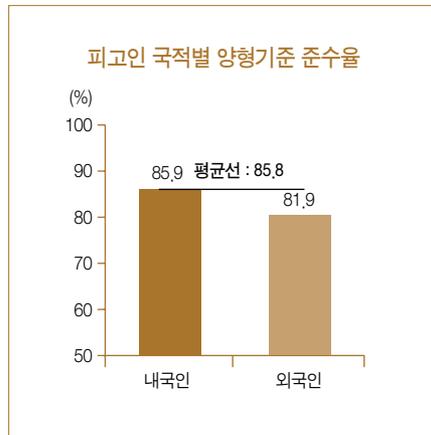
(4) 피고인 특성에 따른 준수율

피고인의 특성에 따른 양형기준 준수율을 알아보기로 하자 피고인의 국적(내국인, 외국인) 및 성별(남, 여)에 따라 양형기준 준수율을 비교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가) 국적 및 성별

단위 : 명, %

국적	양형기준 준수여부					성별	양형기준 준수여부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내국인	35,419	85.9	5,820	14.1	41,239	남성	32,085	86.0	5,217	14.0	37,302
외국인	722	81.9	160	18.1	882	여성	4,056	84.2	763	15.8	4,819
전체	36,141	85.8	5,980	14.2	42,121	전체	36,141	85.8	5,980	14.2	42,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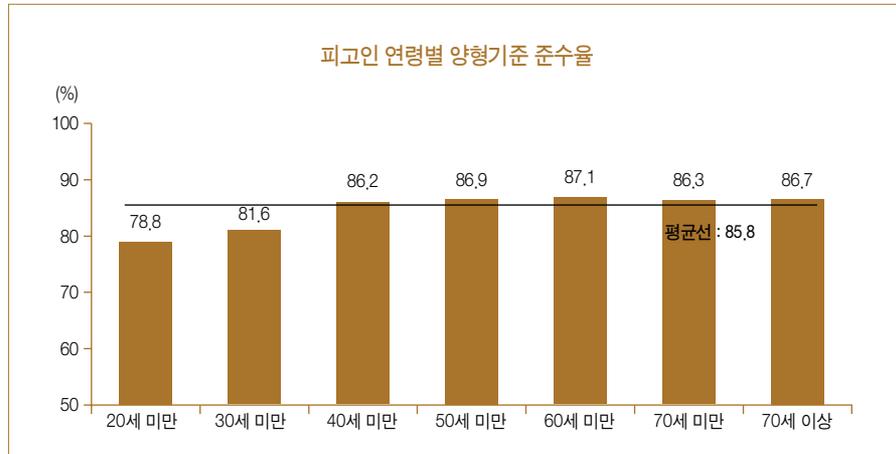
피고인의 국적에 따른 양형기준 준수율은 내국인(85.9%) > 외국인(81.9%)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권고형량보다 낮게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고인의 성별에 따른 양형기준 준수율은 남성(86.0%) > 여성(84.2%)으로 피고인이 남성인 경우 준수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나) 연령

단위 : 명, %

연령	양형기준 준수여부				전 체
	준 수		부준수		
	수	비 율	수	비 율	
20세 미만	676	78,8	182	21,2	858
30세 미만	5,070	81,6	1,142	18,4	6,212
40세 미만	8,385	86,2	1,342	13,8	9,727
50세 미만	11,261	86,9	1,699	13,1	12,960
60세 미만	8,127	87,1	1,200	12,9	9,327
70세 미만	2,148	86,3	342	13,7	2,490
70세 이상	474	86,7	73	13,3	547
전체	36,141	85,8	5,980	14,2	42,121



피고인의 연령에 따른 양형기준 준수율을 보면 피고인이 30세 이상인 사건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모두 86%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피고인이 20세 미만인 사건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78,8%, 30세 미만인 경우 81,6%로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의 어린 나이를 고려하여 권고형량보다 선고형량을 낮춘 하한이 탈이 많았기 때문이다.

(5) 양형기준 명시적 기재 여부에 따른 양형기준 준수율

양형기준의 명시적 기재 여부¹²⁾에 따른 양형기준 준수율은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단위 : 명, %

범죄군	양형기준 명시적 기재 여부	준 수		부준수		전 체
		수	비 율	수	비 율	
살인범죄	기재	519	88.4	68	11.6	587
	미기재	17	100.0	0	0.0	17
	합계	536	88.7	68	11.3	604
뇌물범죄	기재	333	78.5	91	21.5	424
	미기재	127	91.4	12	8.6	139
	합계	460	81.7	103	18.3	563
성범죄	기재	2,075	84.9	368	15.1	2,443
	미기재	311	90.9	31	9.1	342
	합계	2,386	85.7	399	14.3	2,785
강도범죄	기재	722	89.4	86	10.6	808
	미기재	59	86.8	9	13.2	68
	합계	781	89.2	95	10.8	876
횡령·배임 범죄	기재	1,042	90.2	113	9.8	1,155
	미기재	1,503	93.8	100	6.2	1,603
	합계	2,545	92.3	213	7.7	2,758
위증범죄	기재	135	90.6	14	9.4	149
	미기재	276	89.3	33	10.7	309
	합계	411	89.7	47	10.3	458
무고범죄	기재	194	94.6	11	5.4	205
	미기재	384	94.1	24	5.9	408
	합계	578	94.3	35	5.7	613

12) 양형기준의 명시적 기재란 양형기준과 비교하여 나열식 또는 문장식으로 양형이유를 기재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위: 명, %

범죄군	양형기준 명시적 기재 여부	준 수		부준수		전 체
		수	비 율	수	비 율	
약취·유인 범죄	기재	32	69.6	14	30.4	46
	미기재	23	67.6	11	32.4	34
	합계	55	68.8	25	31.3	80
사기범죄	기재	3,053	83.9	584	16.1	3,637
	미기재	7,074	82.4	1,509	17.6	8,583
	합계	10,127	82.9	2,093	17.1	12,220
절도범죄	기재	1,843	86.3	292	13.7	2,135
	미기재	3,488	78.0	983	22.0	4,471
	합계	5,331	80.7	1,275	19.3	6,606
공문서범죄	기재	103	94.5	6	5.5	109
	미기재	363	83.4	72	16.6	435
	합계	466	85.7	78	14.3	544
사문서범죄	기재	155	98.1	3	1.9	158
	미기재	546	94.8	30	5.2	576
	합계	701	95.5	33	4.5	734
공무집행 방해범죄	기재	534	88.6	69	11.4	603
	미기재	1,586	86.4	250	13.6	1,836
	합계	2,120	86.9	319	13.1	2,439
식품·보건 범죄	기재	74	82.2	16	17.8	90
	미기재	239	79.9	60	20.1	299
	합계	313	80.5	76	19.5	389
마약범죄	기재	833	77.3	244	22.7	1,077
	미기재	1,425	81.8	318	18.2	1,743
	합계	2,258	80.1	562	19.9	2,820
증권·금융 범죄	기재	7	87.5	1	12.5	8
	미기재	5	83.3	1	16.7	6
	합계	12	85.7	2	14.3	14

양형기준 명시적 기재여부에 따른 양형기준 준수율을 보면 기재(86.4%) > 미 기재(85.4%)로 명시적 기재가 있는 경우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게 나타났다.

범죄별로는 살인범죄, 뇌물범죄, 성범죄, 횡령·배임범죄, 마약범죄, 지식재산권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양형기준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경우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마. 양형이유 기재방식에 따른 사건 구분

양형이유의 기재방식은,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괄호 안에 해당 양형인자를 간략히 기재하거나 별도의 항목에서 양형이유를 제시하는 전통적 방식, 양형기준과 비교하여 나열식 또는 문장식으로 양형기준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¹³⁾

(1) 범죄군별 분포

양형이유에 양형기준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사건과 전통적 방식에 따라 양형이유를 기재한 사건, 양형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건을 범죄군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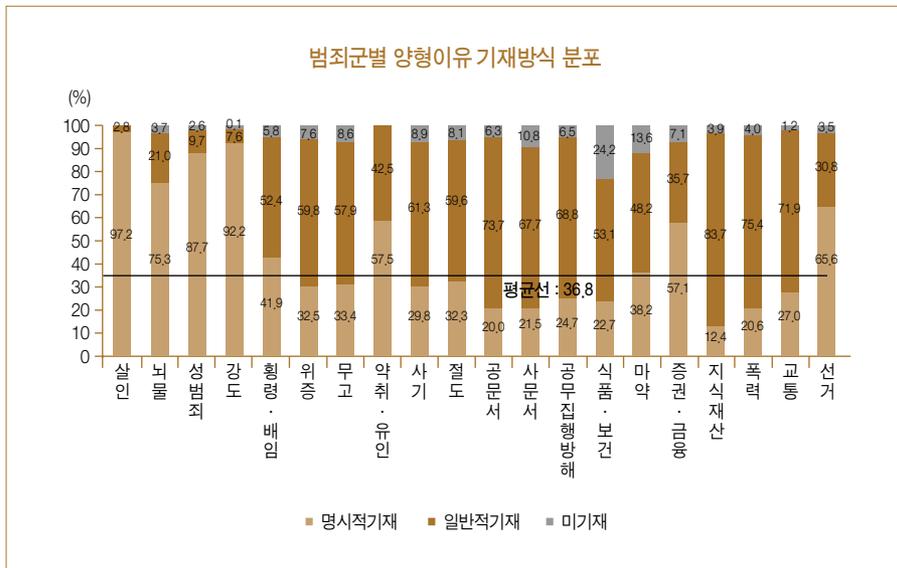
범죄군	양형기준 명시적 기재		일반적 기재 (양형이유 기재)		미기재		전 체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살인범죄	587	97.2	17	2.8	0	0.0	604
뇌물범죄	424	75.3	118	21.0	21	3.7	563
성범죄	2,443	87.7	269	9.7	73	2.6	2,785
강도범죄	808	92.2	67	7.6	1	0.1	876
횡령·배임범죄	1,155	41.9	1,444	52.4	159	5.8	2,758
위증범죄	149	32.5	274	59.8	35	7.6	458
무고범죄	205	33.4	355	57.9	53	8.6	613

13) 양형이유에 양형기준의 명시적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범죄사실, 법령의 적용, 양형이유에 언급된 양형요소 등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양형인자의 존부 및 적용 여부, 양형기준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 명, %

범죄군	양형기준 명시적 기재		일반적 기재 (양형이유 기재)		미기재		전 체
	수	비 율	수	비 율	수	비 율	
약취·유인범죄	46	57.5	34	42.5	0	0.0	80
사기범죄	3,637	29.8	7,490	61.3	1,093	8.9	12,220
절도범죄	2,135	32.3	3,935	59.6	536	8.1	6,606
공문서범죄	109	20.0	401	73.7	34	6.3	544
사문서범죄	158	21.5	497	67.7	79	10.8	734
공무집행방해범죄	603	24.7	1,677	68.8	159	6.5	2,439
식품·보건범죄	90	23.1	207	53.2	92	23.7	389
마약범죄	1,077	38.2	1,360	48.2	383	13.6	2,820
증권·금융범죄	8	57.1	5	35.7	1	7.1	14
지식재산범죄	16	12.4	108	83.7	5	3.9	129
폭력범죄	818	20.6	2,987	75.4	157	4.0	3,962
교통범죄	890	27.0	2,372	71.9	38	1.2	3,300
선거범죄	149	65.6	70	30.8	8	3.5	227
전체	15,507	36.8	23,687	56.2	2,927	6.9	42,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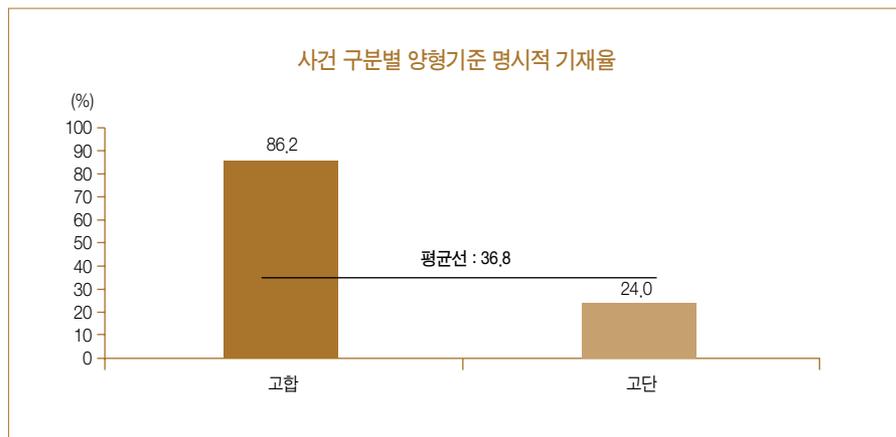
범죄군별로는 살인범죄(97.2%), 강도범죄(92.2%), 성범죄(87.7%) 순으로 명시적 기재율이 높았고, 지식재산권범죄(12.4%), 공문서범죄(20.0%)순으로 명시적 기재율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살인범죄와 약취·유인범죄의 경우 모든 사건에서 양형이유가 기재되었으나, 식품·보건범죄의 경우 양형이유 미기재 비율이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사건 구분에 따른 분포

사건의 구분에 따른 양형기준 명시적 기재율은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단위 : 명, %

사건구분	양형기준 명시적 기재여부				전체
	기재		미기재		
	수	비율	수	비율	
고합	7,486	86.2	1,200	13.8	8,686
고단	8,021	24.0	25,414	76.0	33,435
전체	15,507	36.8	26,614	63.2	42,121



사건의 구분에 따른 명시적 기재율을 보면 고합사건(86.2%) > 고단사건(24.0%)으로, 합의부 사건의 대부분은 판결문에 양형기준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